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42 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김한규·진선미·장철민

민병덕 • 강훈식 • 김태년

윤준병 • 백혜련 • 박정현

임미애 · 박희승 · 이용우

이재정 · 양부남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, 그 중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,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.

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,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, 군 복무 중 발병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,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국가의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.

또한, 현행법의 '의료시설'이라는 용어를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의

'의료기관'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 자 함(안 제20조 등).

법률 제 호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전단 중 "국가의 의료시설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"을 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보훈병원"을 "「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 관"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 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"를 "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3항을 준용한 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하 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"를 "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"로 한다.

제20조의3 전단 중 "보훈병원"을 각각 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

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의료 지원) ① 국가는 전	제20조(의료 지원) ①
상(戰傷)이나 공상(公傷)을 입	
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	
상이(傷痍) 정도가 「국가유공	
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	
률」 제4조제1항제4호・제6호	
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	
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	
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	
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	
처(傷痍處)(본인의 고의로 악화	
된 경우는 제외한다)를 <u>국가의</u>	「국가유공자
의료시설[「한국보훈복지의료	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	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
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	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
을 포함한다]이나 지방자치단체	기관
의 의료시설 또는 「국가유공자	
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	
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	
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.	,
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	
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	
원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3항	
을 준용한다.	

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. 이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.
- ③ (생 략)
-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⑤ (생략)

2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	
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에	
<u>따른 의료기관</u>	
<u>비용 부담</u>	
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	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	
42조제3항을 준용한다.	
③ (현행과 같음)	
④	
제1항에 따른	
<u>.</u>	
비용 부	
담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	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	
42조제3항을 준용한다.	
1.•2. (현행과 같음)	
⑤ (현행과 같음)	

제20조의3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 지구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국가가 부담한다.

세20조의3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
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2조
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
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에
<u> 따른 의료기관</u>